

#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-292호

## 공 고

**2024.3.1.자 중등 초빙(공모)교사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합니다.**

**2023년 10월 30일**

**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**



### 1. 관련
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(초빙교원)제2항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(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)

### 2. 초빙(공모)교사 초빙 기간

- 2024. 3. 1. ~ 2030. 2. 28.(6년)

### 3. 학교별 응모 영역 및 신청 요건

#### 가. 초빙교사제

초빙 학교	초빙 교과	초빙 인원	초빙교사 신청요건
군산 자양중	과학	1명	과학실의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어서, 전자칠판, 와이파이 등의 디지털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실험·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음. 과학융합수업과 교과연계 수업, 자유학기 주제선택수업 등 학생 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사를 초빙하고자 함.
나포중	수학	1명	나포면의 지역거점 중학교로서 나포초와 협업으로 마을학교 및 미래학교 사업을 충실히 지원해 갈 수 있고 학생들과 교육에 대해 공감하는 교사

## 나. 공모교사제

공모 학교	공모 교과	공모 인원	공모교사 신청요건
군산 산북중	수학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</li><li>○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활용에 적극 참여</li><li>○ 기초, 기본 학력 증진 및 수업 혁신에 적극 참여</li></ul>
	기술 가정	1명	
	체육	1명	

## 4. 임용 요건

### 가. 초빙(공모)교사 공통 적용 사항

- 1) 우리교육청 소속 공립 각급학교,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(비교과 교사 제외)를 대상으로 한다.
- 2) 신청서류 제출일 현재, 도서·벽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, 국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제외한다.
- 3) 현임교, 현임지역 만기자는 각각 현임교, 현임지역 초빙(공모)교사에 지원할 수 없다. 단,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는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학교 근무 시작을 지역 근무 연한의 시점으로 한다.

### 나. 초빙교사 대상자

- 1)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학교 교사 초빙 요구 조건에 적합한 자로서 정기전보 대상자 중 순환전보 대상자(현임교, 현임지역), 폐교 및 학급감축,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대상자로 한다.
- 2)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, 교육과정,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 다. 공모교사 대상자

- 1) 전북미래학교(혁신학교): 현임교에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.
- 2) 혁신+학교,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: 현임교에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.
- 3) 구체적인 공모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, 교육과정,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 5. 초빙(공모)교사의 인사

- 가. 초빙(공모)교사제 실시는 매년 정기전보 시 실시한다.
- 나. 초빙교사는 현임교에서 순환전보(감축 포함) 대상이 되어 교사 초빙에 신청할 때, 현임교가 1, 2급지인 경우 3, 4, 5급지 학교에만 신청할 수 있다.
- 다. 초빙(공모)교사는 초빙(공모)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. 다만, 초빙(공모)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동일교에서 3년 이상 근속자를 순환전보대상자로 간주하여 전보하며,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(교육감)에게 전보 승인 요청(사유서, 학교장 확인서, 증빙자료 첨부)

### 〈근거자료〉 교육공무원 인사실무(교육부 교원정책과, 2016)

#### II. 교사초빙제 4. 초빙교사의 인사

- 라.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. 다만,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거나, 초빙교사 임용권자(교육감) 직권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음
- 사. 초빙교사 임용권자(교육감)는 학교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일정기간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초빙교사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향후 초빙 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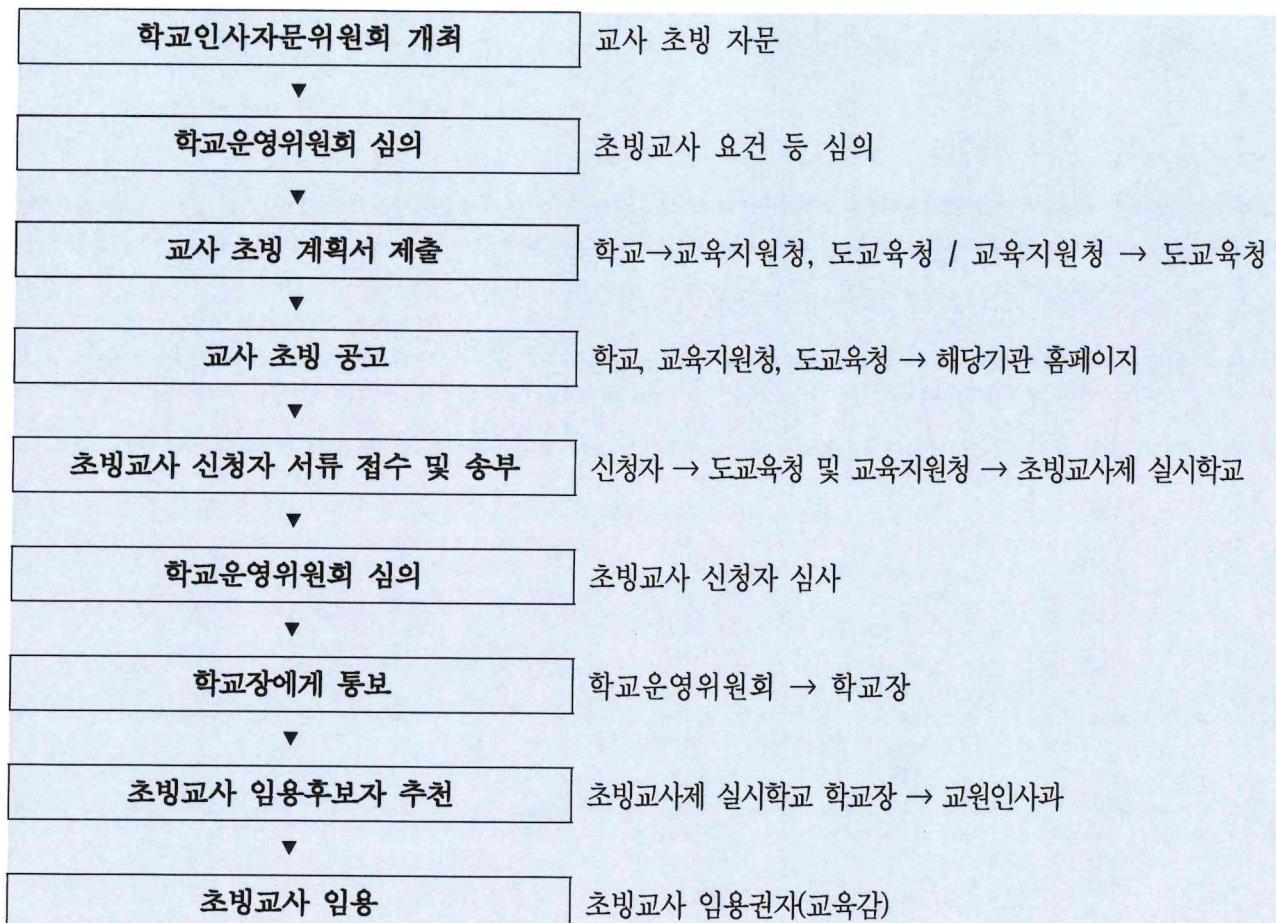
- 라. 시·도간 교류는 동일교 2년 이상 근속자도 지원 가능.
- 마.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에서 순환전보 대상자와 초빙기간이 만료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속하여 재초빙(공모) 할 수 있다.  
※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 이외의 동일교 재초빙은 연속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
- 바. 초빙(공모)교사의 근무 기간은 지역 근무 연한에 포함한다.
- 사. 절차상 하자 및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는 초빙(공모)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- 아. 초빙(공모)교사 희망자는 1개교에만 '초빙(공모)교사 지원서'를 제출할 수 있다.  
(1인이 2개교 이상 중복 지원 시 초빙 임용을 취소함)
- 자. 중학교의 경우 '전출 동의 요구' 및 '전출 동의 회신' 공문을 해당 지역 교육 지원청을 통하여 시행한다.(7쪽의 '동의 요청 및 회신 절차' 참고)
- 차. 초빙(공모)교사로 전입한 후 현임교 근무기간 중에는 파견, 전직, 기타 선발 전형 응시 등이 제한되며, 휴직 기간은 초빙(공모)교사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## 6. 초빙(공모)교사의 응시제한 기준

- 가.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
- 나. 금품수수,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,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, 성폭력 등으로 경고를 받은 자
- 다.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,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,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
- 라. 초빙(공모), 학교장 전입요청 교사로서 기간(6년) 만료 전 전보를 희망한 경우

## 7. 임용 절차

### 가. 초빙교사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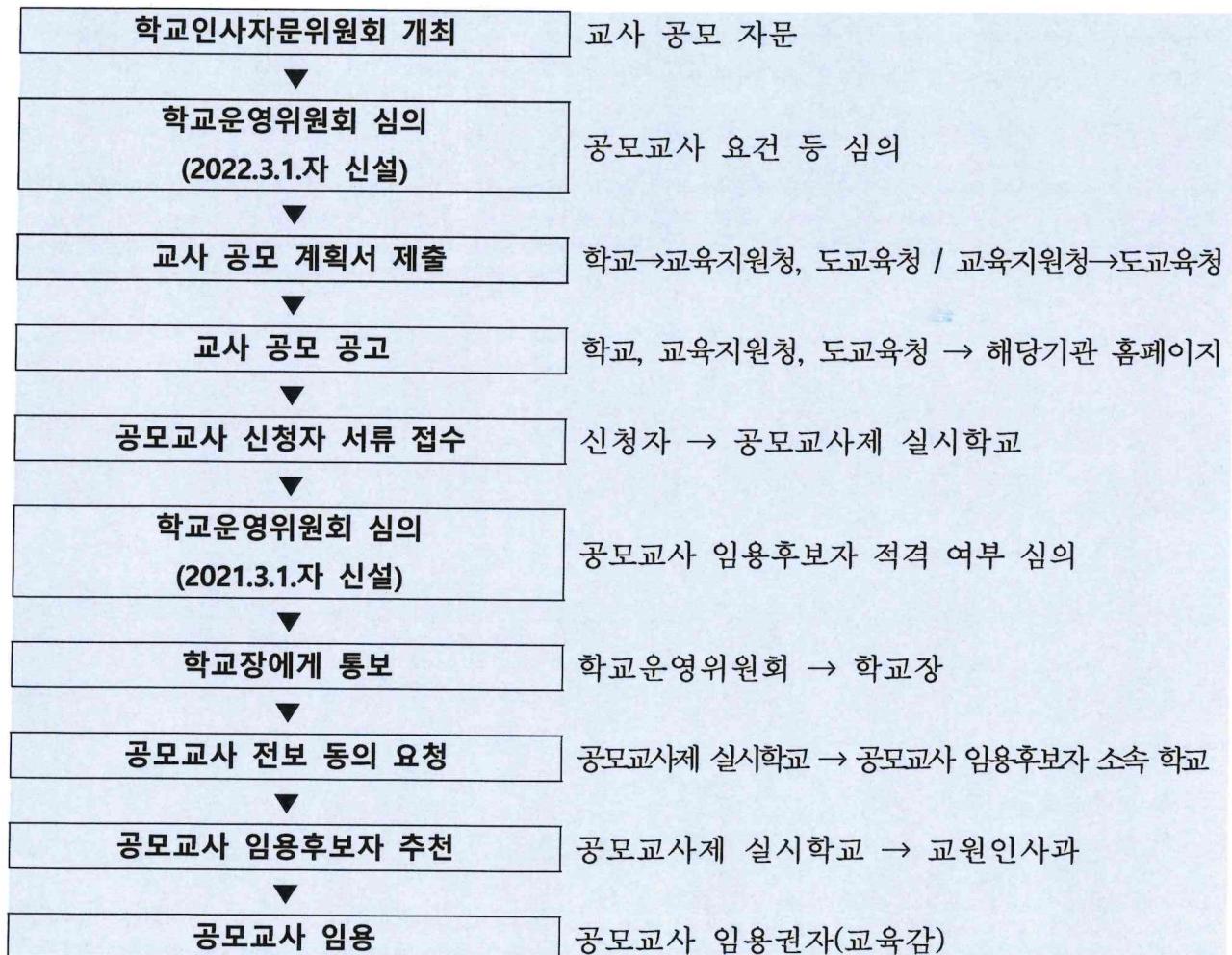


- 1) 학교장은 교사 초빙 여부 및 초빙 요건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, 교육과정, 기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사 초빙 여부를 결정한다.
- 2) 학교장은 초빙교사 공고 시 초빙 목적, 초빙 기간, 초빙 과목, 소지자격증 구분, 초빙 인원, 연령 등 초빙 요건을 학교, 교육지원청, 도교육청 통해 공고한다.

\* 초빙(공모)교사 계획서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하고,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공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 학교는 초빙계획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위학교로 공문발송은 자제하기 바람.

- 3) 초빙 공고는 1회로 하되,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(1차 공고 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초빙교사제를 취소한다.).
- 4) 초빙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중학교는 교육지원청,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관련서류(관련 증빙자료 포함) 등을 갖추어 지원한다.
- 5)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, 학교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.
- 6) 학교장이 추천한 초빙교사 임용후보자라 하더라도 학급감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초빙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나. 교사 공모제



- 1) 학교는 전북미래학교(혁신, 혁신+)에 같이 근무할 교사의 교육철학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모교사제 실시안을 마련하고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- 2) 공모교사제 공고 시 응시자가 없을 때에는 교사초빙제로 대신 할 수 있다.
- 3)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모교사 임용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고, 학교장은 적격자를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.
- 4) 학교장이 추천한 공모교사 임용후보자라 하더라도 학급감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공모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8. 초빙(공모)교사 신청자 제출서류

### 가. 군산자양중학교 초빙교사 신청 관련 안내

- 1) 신청 시 제출서류
  - 초빙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서식1).
  - NEIS 인사기록 출력물(원본대조필) 1부.
  - 초빙교사 관련 증빙 서류
  - 공모 요구 조건에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증빙 서류 1부 등
- 2) 접수기간 및 장소
  - 기간 : 2023.11.2.(목) ~ 2023.11.8.(수)
  - 장소 :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(☎ 450-2642, 2646)  
※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군산산북중학교 공모교사 신청 관련 안내

- 1) 신청 시 제출서류
  - 공모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.
  - NEIS 인사기록 출력물(원본대조필) 1부.
  - 공모교사 관련 증빙 서류
  - 공모 요구 조건에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증빙 서류 1부 등
- 2) 접수기간 및 장소, 이후 일정
  - 기간 : 2023. 11. 1.(수) ~ 11. 7.(화)
  - 장소 : 군산산북중학교 본교무실  
  
※ 신규교사 비율이 많은 학교로 경력 교사 필요  
※ 기초학력 신장에 적극적인 참여  
※ 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로 선정  
※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**9. 행정 사항**

### **가. 학교급에 따른 전출동의 요청 및 회신절차**

\* 공모 교사가 순환전보 대상자가 아닐 경우(현임교 2년~6년미만 근무교사) 필요한 절차임

<공모 교사제 실시학교가 A이고, 신청 교사의 현임교가 B일 때, 전출동의 요청 및 회신 절차>

#### **◎ A학교, B학교가 모두 고등학교일 경우**

1. A학교에서 B학교로 ‘전출동의 요구(서식 24)’ 공문 발송

2. B학교에서 A학교(전출동의서 사본 1부 첨부)로 ‘전출동의 회신(서식 25)’ 공문 발송

\* 공모교사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전출동의서 원본 2부 중 1부는 A학교에서 보관하고  
1부는 인사서류 제출시 교원인사과에 제출

#### **◎ A학교가 중학교이고 B학교가 고등학교일 경우**

1. A학교에서 B학교로 ‘전출동의 요구(서식 24)’ 공문 발송

2. B학교에서 A학교(전출동의서 사본 1부 첨부)와 A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‘전출  
동의 회신(서식 25)’ 공문 발송

\* 공모교사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전출동의서 원본 2부 중 1부는 A학교에서 보관하고  
1부는 교육지원청으로 인사서류 제출시 제출

#### **◎ A학교가 고등학교이고 B학교가 중학교일 경우**

1. A학교에서 B학교와 B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‘전출동의 요구(서식 24)’공문 발송

2. B학교에서 B학교 소속 교육지원청과 A학교(전출동의서 사본 1부 첨부)로‘ 전출동의 회신  
(서식 25)’공문 발송

\* 공모교사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전출동의서 원본 2부 중 1부는 A학교에서 보관하고  
1부는 교원인사과로 인사서류 제출시 제출

#### **◎ A학교와 B학교가 모두 중학교일 경우**

1. A학교에서 B학교와 B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‘전출동의 요구(서식 24)’공문 발송

2. B학교에서 B학교 소속교육지원청, A학교(전출동의서 사본 1부 첨부) 및 A학교  
소속 교육지원청으로 ‘전출동의 회신(서식 25)’ 공문 발송

\* 공모교사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전출동의서 원본 2부 중 1부는 A학교에서 보관하고  
1부는 교육지원청으로 인사서류 제출시 제출